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3. 9. 14(목) 10:00

제24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푸른미래도시국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408호
- 나. 제 출 자 : 엄셋별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3. 9. 5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9. 5.

2. 제안이유

구민이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근거를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의 적용범위 확대(안 제7조제6호)
- 나.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의무사항으로 변경(안 제10조제1항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 - 2) 「건축법」 제53조의2,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63조의6
- 나. 예산조치: 필요시 예산조치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이유

본 개정안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협력 체계를 정비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음.

나. 주요 내용

- 1)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의 적용범위 확대(안 제7조제6호)
 -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사업 범위를 신설 규정
- 2)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의무사항으로 변경(안 제10조제1항)
 - 범죄예방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함

다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범죄취약 지역에 대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여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,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3. 7. 10.] [법률 제19430호, 2023. 6. 9., 타법개정]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3. (생략)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·운영

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
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
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
차. 지방공기업을의 설치 및 운영

□ 「건축법」

[시행 2023. 6. 11.] [법률 제18935호, 2022. 6. 10., 일부개정]

제53조의2(건축물의 범죄예방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,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.

□ 「건축법 시행령」

[시행 2023. 5. 16.] [대통령령 제33466호, 2023. 5. 15., 일부개정]

제63조의6(건축물의 범죄예방)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

1. 다가구주택, 아파트,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
2.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
3.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
4. 문화 및 집회시설(동·식물원 제외한다)
5. 교육연구시설(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)
6. 노유자시설
7. 수련시설
8.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
9.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